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6. 11 선고 2020나70115 판결 [계약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, 피항소인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일

담당변호사 조준상

피고, 항소인 B

변 론 종 결 2021. 4. 23.

판 결 선 고 2021. 6. 11.

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9. 23. 선고 2020가소1794035 판결

주 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피고는 원고에게 27,72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. 8. 7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6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유통업, 광고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, 피고는 'C'라는 상호로 장비 제작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.

나. 원고는 2019. 8. 5. 피고와의 사이에 사물인식 3D캠, GPS 등의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시각장애인이 마라톤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기인 'D'(이하 '이 사건 장비'라 한다)를 제작하는 계약(이하 '이 사건 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는데,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- 계약명: E은행 D 제작(글래스+백팩)
- 계약 총금액: 42,000,000원(이하 부가가치세 별도)
- 계약금: 25,200,000원
- 잔금: 16,800,000원
- 지급방법
 - 1) 계약금은 계약 시 당일 지급
 - 2) 잔금은 시운전 후 납품 시 당일 지급
- 개발기간: 약 30일(구조 변경 시 협의)

2. 갑(원고)은 상기용역 설계 및 개발을 을(피고)에게 위임하고, 을은 책임설계 및 납품 시까지 발생하는 모든 제반경비를 부담한다.

6. 계약의 해제

- 1) 갑과 을은 상대방이 본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대방에게 본 계

약 해제의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고,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해제된다.

2) 갑의 심사기준에 의하여 을의 개발수행능력이 기준미달이라고 판단되는 경우, 갑은 을이 진행 중인 개발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, 이때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된다.

3) 을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의 경우, 을은 갑에게 기 지급한 개발용역비를 반환하여야 하고, 갑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지의 경우 갑은 을에게 기 지급한 개발용역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.

다.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9. 8. 7. 피고에게 계약금 27,720,000원(부가가치세 포함)을 지급하였고, 피고는 원고에게 2019. 8. 30.까지 최종 검수를 거쳐 이 사건 장비를 납품하는 내용의 일정표를 제시하였다.

라. 피고는 2019. 9. 2. 원고 직원 F에게 이 사건 장비 시제품을 제시하였으나, F은 피고에게 시제품의 글래스 중앙 부분에 전선 처리가 되어 마라톤을 할 때 착용하기 어려운 등의 문제로 시제품을 반품하고 이 사건 장비의 보완을 요구하였다.

마. 이후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장비를 납품하지 못하였고, 원고는 2019. 9. 16.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는 통지를 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이 사건 계약서 제6조에서 원고가 피고의 개발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,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, 피고는 당초 예정했던 납품기일이 지난 2019. 9. 2. 이 사건 장비 시제품을 납품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원고의 검수를 통과하지 못한 사실, 이에 원고가 2019. 9. 16.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27,720,000원 및 계약금이 지급된 2019. 8. 7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이 송달된 2020. 6.

8.까지 상법이 정한 연 6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

이에 대하여 피고는, 이 사건 장비의 납품이 늦어진 것은 원고의 이 사건 계약 외 추가 작업 요청으로 인한 것이고, 피고가 2019. 10. 18. 이 사건 장비를 납품하였으므로, 원고의 이 사건 계약 해제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. 살피건대,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장비 납품이 늦어진 데 피고의 귀책사유가 없다거나 피고가 이 사건 장비를 납품하여 검수를 마쳤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,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.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(피고는 이 법원 변론종결 후 선고 전인 2021. 6. 7.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겠다는 이유로 변론재개를 신청하였지만, 첨부서류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 변론을 재개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변론을 재개하지 아니하였음을 밝혀둔다).

재판장 판사 이성철, 판사 권혁준, 판사 박미선